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김종해  
대한민국 10129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16 101 동701호

발송일 (일/월/년) 2018년 12월 12일 (12.12.2018)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SOLARCELL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07699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8년 07월 06일 (06.07.2018)

우선일 (일/월/년)  
2017년 08월 28일 (28.08.2017)

국제특허분류(IPC)  
H02S 20/30(2014.01)i, H02S 30/10(2014.01)i

출원인  
김종해 등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p>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p> 	<p>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8년 12월 12일 (12.12.2018)</p>	<p>심사관 박해련 전화번호 +82-42-481-3463</p> 
---	--	---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14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14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14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 D1: JP 2012-174788 A (FUJI ELECTRIC CO., LTD. 등) 2012.09.10
- D2: KR 10-1725037 B1 (마당월드 주식회사 등) 2017.04.10
- D3: KR 10-1368923 B1 ((주)에이비엠그린텍) 2014.03.04
- D4: KR 10-2008-0027092 A (김송귀) 2008.03.26

1. 신규성 및 진보성

1.1 청구항 1-4

1.1.1 독립항 1

청구항 1 발명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지지 프레임(20)을 포함하는 슬라이드 기구(50)(D1의 단락 44 참조)와, 여러 장의 태양전지 모듈(30)이 연결 부재(40)에 의해 지지 프레임(20)상에 배치되고, 체인의 구동에 따라 이동되고(D1의 단락 21참조), 체인 구동에 따라 슬라이드 기구(50)에 의해 지지 프레임(20)이 슬라이드되어 태양전지 모듈을 배치하거나 적층 정리하는 회동 가능한 태양전지 모듈을 포함하는 태양광 발전장치(D1의 단락 44 참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 1 발명은 레일간의 사이 상단부와 하단부간에 구성한 와이어로프 와인딩 수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인용문헌 D1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기술분야인 인용문헌 D2의 복수의 회전체를 이용하여 와이어를 권취하여 태양광모듈을 설치하는 구성(D2의 단락 28, 도면 1-2 참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 발명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상기 특징을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진보성이 없습니다(PCT 제33조(3)).

1.1.2 종속항 2, 4

추가 기재란에 계속

##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2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기울임 기구(60)를 통해 지지프레임(20)에 연결된 태양전지 모듈(30)의 경사각도를 변화하는 구성(D1의 단락 21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설계 변경 가능한 기술 사항에 해당됩니다.

청구항 4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스프로킷(53) 및 체인(55)을 포함하는 슬라이드 기구(50)가 체인 구동에 따라 지지 프레임(20)이 슬라이드되어 태양전지 모듈을 배치하거나 적층 정리되는 구성(D1의 단락 30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설계 변경 가능한 기술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구항 2, 4는 인용문헌 D1, D2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진보성이 없습니다(PCT 제33조(3)).

### 1.1.3 종속항 3

청구항 3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3에 기재된 태양전지모듈(70) 사이에서 가이드레일과 결합되고, 작업자가 이동하는 통로로 이용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되는 작업판(80)(D3의 단락 25-26, 44-51, 도면 1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설계 변경 가능한 기술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구항 3은 인용문헌 D1, D2 및 D3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진보성이 없습니다(PCT 제33조(3)).

## 1.2 청구항 5-8

### 1.2.1 독립항 5

청구항 5 발명은 솔라셀 패널 거치 시스템 장치에 관한 것으로, 청구항 1 발명과 기술적 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5 발명은 인용문헌 D1, D2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진보성이 없습니다(PCT 제33조(3)).

### 1.2.2 종속항 6, 8

청구항 6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기울임 기구(60)를 통해 지지프레임(20)에 연결된 태양전지 모듈(30)의 경사각도를 변화하는 구성(D1의 단락 21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설계 변경 가능한 기술 사항에 해당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8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스프로킷(53) 및 체인(55)을 포함하는 슬라이드 기구(50)가 체인 구동에 따라 지지 프레임(20)이 슬라이드되어 태양전지 모듈을 배치하거나 적층 정리되는 구성(D1의 단락 30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설계 변경 가능한 기술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구항 6, 8은 인용문헌 D1, D2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진보성이 없습니다(PCT 제33조(3)).

## 1.2.3 종속항 7

청구항 7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3에 기재된 태양전지모듈(70) 사이에서 가이드레일과 결합되고, 작업자가 이동하는 통로로 이용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되는 작업판(80)(D3의 단락 25-26, 44-51, 도면 1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설계 변경 가능한 기술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구항 7은 인용문헌 D1, D2 및 D3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진보성이 없습니다(PCT 제33조(3)).

## 1.3 청구항 9-14

## 1.3.1 독립항 9

청구항 9 발명은 청구항 1 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만 상이할 뿐 발명의 실질적이 내용이 동일하여 청구항 1 발명과 동일한 취지의 이유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구항 9 발명은 인용문헌 D1, D2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진보성이 없습니다(PCT 제33조(3)).

## 1.3.2 종속항 10, 12-14

청구항 10, 13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기울임 기구(60)를 통해 지지프레임(20)에 연결된 태양전지 모듈(30)의 경사각도를 변화하는 구성(D1의 단락 21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설계 변경 가능한 기술 사항에 해당됩니다.

청구항 12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태양전지모듈(30)을 지지프레임(20)에 형성하는 것(D1의 청구항 1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설계 변경 가능한 기술 사항에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해당됩니다.

청구항 14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태양전지모듈(30)이 슬라이드되는 지지프레임(20)에 연결부재(40)에 의해 지지되는 구성(D1의 단락 28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설계 변경 가능한 기술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구항 10, 12-14는 인용문헌 D1, D2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진보성이 없습니다(PCT 제33조(3)).

### 1.3.3 종속항 11

청구항 11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4에 기재된 태양전지모듈을 크레인으로 일으켜 세워 거치하는 것(D4의 청구항 1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설계 변경 가능한 기술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구항 11은 인용문헌 D1, D2 및 D4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진보성이 없습니다(PCT 제33조(3)).

##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1-14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PCT 제33조(4)).